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법제처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3. 8. 16. ~ 8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3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조의4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조의5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조의6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부이사관

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”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동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,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동남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, 충청지방통계청은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”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

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”로, “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”로, “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”로, “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, “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

·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, “(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”을 “(5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(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(4급 또는 5급”으로, “33인(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인,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인, 행정주사 ·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5인, 행정주사보 · 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인,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3인)”를 “34인(4급 3명, 5급 9명, 6급 15명, 7급 4명, 8급 3명)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3(대변인) 대변인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1조의3(대변인)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1조의4(기획조정관) ① (생 략)	제1조의4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조의5(감사담당관) 감사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1조의5(감사담당관) ----- 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1조의6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1조의6(운영지원과) ----- 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2조(통계정책국) ① (생 략)	제2조(통계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 · 경제통계심사조정과 · 사회통계심사조정과 · 통계기준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</u>	②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</u>

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2조의2(통계데이터허브국) ① ~ ③ (생략)

④ 통계데이터허브국에 통계데이터기획과, 행정자료관리과, 통계등록부과, 행정통계과, 빅데이터통계과, 마이크로데이터과, 통계서비스기획과, 조사시스템관리과, 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⑤ ~ ⑭ (생략)

제3조(경제통계국) ① ~ ③ (생략)

④ 경제통계국에 경제통계기획과·소득통계과·경제총조사과·산업통계과·산업동향과·서비스업동향과·물가동향과 및 기업통계팀을 두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팀장은 서기관·기술

서기관-----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조의2(통계데이터허브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

또는 서기관-----
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-----.

⑤ ~ ⑭ (현행과 같음)

제3조(경제통계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팀장은 과학기술

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⑤ ~ ⑫ (생략)

제4조(사회통계국) ① (생략)

②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 · 인구동향과 · 고용통계과 · 가계수지동향과 · 복지통계과 · 농어업통계과 및 농어업동향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⑨ (생략)

제5조(조사관리국) ① (생략)

②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 · 인구총조사과 · 표본과 및 스마트조사센터를 두며,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6조(통계교육원) ① (생략)

②통계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, 각 과장은

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전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----.

⑤ ~ ⑫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사회통계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③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조사관리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통계교육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8조(지방통계청) ① (생략)

② 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지방통계청에 조사지원과, 지역통계과, 경제조사과, 사회조사과 및 농어업조사과(경인지방통계청은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를 둔다)를 두며,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.

1. 조사지원과장 : 경인지방통계청, 동북지방통계청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

2. 지역통계과장 : 경인지방통계청, 동북지방통계청 및 호남지

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지방통계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.

③ -----

--.

1.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-----.

2. -----

방통계청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동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,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

3. 경제조사과장 : 경인지방통계청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동북지방통계청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,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

4. 사회조사과장 : 경인지방통계청, 동북지방통계청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,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 또는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동남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, 충청지방통계청은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----

3. -----
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-----
--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-----.

4.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--

--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

제9조(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)

제9조(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)

①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서울사무소장·인천사무소장·수원사무소장·안동사무소장·목포사무소장·전주사무소장·제주사무소장 및 울산사무소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강원지방통계지청에 지역통계과, 경제사회조사과, 농어업조사과를 두며,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10조(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통계청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

① 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---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-----

-----.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-----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「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으며,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(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통계청장은 별표 3의 통계청 공무원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(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)과 그 밖의 정원중 33인{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인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인, 행정주사·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5인, 행정주사보·통계주사보 또

-----.

----- 10퍼센트-----

-----(5급 -----

-----.

②-----

-----(4급 또는 5급 -----

----- 34인(4급 3명, 5급 9명, 6급 15명, 7급 4명, 8급 3명)-----

는 전산주사보 4인,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3인}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11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

② 지방통계청·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「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 2와 같다.

③ (생략)

제13조(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)

① 「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2조에 따른 국장급 개방형직위는 조사관리국장으로 한다.

②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

-----.

제11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----- 10퍼센트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라 빅데이터통계과장, 조사시스
템관리과장, 통계개발원에 두는
실장 중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
·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
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
실장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
보할 수 있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통계청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· · <u><신 설></u>	· · <u>8</u>	+8
<u>서기관</u> 또는 <u>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30</u>	+30
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 사무관 · 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27</u>	+27
<u>과학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전산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8</u>	<u><삭 제></u>	-8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30</u>	<u><삭 제></u>	-30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 관 · 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27</u>	<u><삭 제></u>	-27
<u>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전산사무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
	.	.	.	
	.	.	.	

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의2]

통계청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8</u>	+8
<u>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30</u>	+30
<u>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 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27</u>	+27
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8</u>	<u><삭 제></u>	-8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30</u>	<u><삭 제></u>	-30
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 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27</u>	<u><삭 제></u>	-27
<u>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


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]

통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<u>서기관 또는</u> <u>과학기술서기관</u>	· · <u><신 설></u>	· · <u>2</u>	+2
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</u> <u>사무관 · 통계사무관 또는</u> <u>전산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</u> <u>관 · 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 ·	· ·	· ·	

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5]

지방통계청·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2항 본문
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8</u>	+8
<u>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 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0</u>	+10
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8</u>	<u><삭 제></u>	-8
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 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10</u>	<u><삭 제></u>	-10
·	·	·	
·	·	·	

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5의2]

지방통계청·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2항 단서
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8</u>	+8
<u>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 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0</u>	+10
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8</u>	<u><삭 제></u>	-8
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 관·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	<u>10</u>	<u><삭 제></u>	-10
·	·	·	
·	·	·	